자산운용규정

제정 2009. 12. 28. 개정 2013. 6. 11. 개정 2017. 8. 16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'진흥원'이라 한다) 정관 제29조의 운영재원과 관련하여 진흥원 자체수입 및 여유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 및 수익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산운용의 기본방향)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.

- 1. 관련법령 및 규정상의 제한사항 준수
- 2. 자금의 안정성 확보
- 3. 예측가능한 지출뿐 아니라 예측이 어려운 지출에 대한 유동성 충족
- 4. 자체수입의 경우 목적에 부합하고, 재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고려한 공공성 확보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자체수입"이라 함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수수 료 및 이자수입, 임대수입, 잡수입 등 출연금을 제외한 진흥원의 수입을 말한다.
- 2. "여유자산"이라 함은 자체수입의 초과분 등 유동성 여유자산을 말하며, 유형과 무형 비유동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3. "목표수익률"이라 함은 자산운용정책에 따라 사전적으로 설정되는 자산운용 수익률의 목표치를 말한다.

- 4. "기준수익률"이라 함은 운용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설정되는 비교대상 수익률을 말한다.
- 5. "위험허용한도"라 함은 자금운용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의 수용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.

제2장 자산운용위원회 및 운용부서

- 제4조(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자체수입 및 여유자산의 운용
 -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-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- 1. 자산의 세부운용기준 수립 및 변경
 - 2. 투자정책의 수립 및 자산배분
 - 3. 목표수익률, 기준수익률, 위험허용한도, 전략적 자산배분 등을 포함한 여유자산운용계획의 수립
 - 4. 그 밖의 자산운용상 중요사항
 - ③본 위원회는 자체수입 및 여유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및 관리만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5조(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, 이 중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.
 - ②위원장은 진흥원의 담당업무부서장으로하고 예산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나머지 위원은 원장이 선임한다.
 -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예산담당 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④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내로 하며, 선임 위원의 경우 원장이 임기를 결정한다.
- 제6조(회의 및 의결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, 재적위원

-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할수 있다.
- ②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(영상회의를 포함한다)를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위원회를 개최할수 있다.
- 제7조(회의록)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개최일시, 장소,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작성된 회의록은 원장보고 및 확인을 거쳐 자산운용부서가 관리한다.
- 제8조(자산운용부서) 위원회는 진흥원내 자산운용 실무를 담당하는 운용 부서를 두며, 예산 담당부서가 운용부서가 된다.
- 제9조(자산운용부서의 기능) ①자산운용부서는 자체수입을 포함한 자산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, 조정 및 통제한다.
 - ②자산의 출납 등 재무운영은 회계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.

제3장 자체수입

- 제10조(자체수입의 운용계획) 자체수입의 운용계획은 진흥원 정관 제32조 '예산 및 운영계획'을 준용하여 진흥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개정 2013.6.11., 2017.8.16.>
- 제11조(자체수입의 예산편성 및 집행) 자체수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진흥원의 회계규정 및 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- 제12조(자체수입의 구성) 자체수입은 사업 진행시 발생하는 수입, 이자수입, 임대수입, 잡수입 등으로 구성된다.

- 제13조(자체수입 지출항목) ①자체수입은 아래의 각 호의 내용으로 지출 할 수 있다.
 - 1. 수입 발생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수행비
 - 2. 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예산 내 편성되지 않은 항목 중, 지방이전비용 등 기관운영에 있어 불가피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항목
 - 3. 수입 및 기관운영에 따른 법인세 및 예비비 등
 - ②정부예산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수입의 지출은 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

제4장 여유자산

- 제14조(여유자산운용계획의 수립) ①위원장은 자체수입 초과분 및 여유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금수급 계획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도별 자산운용계획(이하 "자산운용계획"이라 한다) 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목표수익률 및 기준수익률
 - 2. 적정유동성
 - 3. 기간별, 투자상품별 자산배분
 - 4. 위험허용한도
 - 5. 그 밖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사항
 -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필 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진흥원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- 제15조(목표수익률의 설정) ①위원장은 여유자산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여야 한다.
 - ②목표수익률은 현재 운용중인 상품과 향후 운용예정상품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다.

- ③목표수익률은 여유자산의 총 목표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수익률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.
- ④목표수익률은 회계 연도 중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동 또는 금융시장 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.
- 제16조(기준수익률의 설정) ①위원장은 자산운용의 성과를 비교·측정하고 향후 자산 운용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 수익률을 설정하여야 한다.
 - ②기준수익률은 전체 및 자산군별로 운용상품과 만기구조 등을 고려하여 기준이 되는 대상과 수익률을 정한다.
 - ③기준수익률은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동 또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.
- 제17조(적정유동성의 관리) ①위원장은 자산의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 정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 - ②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은 현금성자금과 유동성자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- 제18조(자산배분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 투자대상 자산 별·기간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자산배분은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목표수익률 및 위험허용한도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연간 자산운용계획의 변경 또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- 제19조(위험관리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진흥원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 - ②위원장은 유형별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산운용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- 제20조(운용성과평가) ①위원장은 자산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산운용기관별 및 투자상품별 성과를 매반기마다 평가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평가할 수 있다.
 - ②운용성과는 목표수익률과 기준수익률에 의하여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고,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 - ③자산운용기관의 투자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운용으로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한 경우 자금의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- ④위원장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운용성과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3. 6. 11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7. 8. 16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